

문 의	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	과 장 임영희 사무관 유철중	042-481-5879 042-481-5918
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2019년 7월 22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매체는 7월 21일(알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		

“심판속보서비스, 이제 이메일로 받아보세요!”

- 특허심판원, 주요사건 심결문 및 요지 속보서비스 개시 -

- 특허심판원(원장 박성준)은 주요 심판사건에 대한 심결문과 관련 사건의 요지를 특허심판원 홈페이지(www.kipo.go.kr/ipt) 및 이메일을 통해 속보로 공개한다고 밝혔다.
- 특허심판원은 한 해 처리되는 10,000여건의 심판 사건 중 새로운 법률적·기술적 쟁점이 있거나,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을 선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.
- 흥미로운 사건의 한 예로, ‘상처치료용 연고제로 유명한 ‘마데카솔’ 상표를 ‘화장품’에 사용할 수 있을까?’
- ‘마데카솔’ 상표는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인식되어 있어서, ‘화장품’에 상표등록을 하여도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. 그 이유는 화장품법에서 ‘의약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.

- 원래 상표는 등록 후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취소되나, 위와 같이 ‘화장품법 규제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수 없던 사유가 있는 경우, 등록취소될 수 있는가’와 같이 흥미로운 쟁점들을 심판속보로 소개할 예정이다.
- 심판결과가 법원을 거쳐 확정되려면 장시간이 소요되지만, 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심판속보서비스를 도입했으며, 다만 해당 사건은 법원에 제소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.
-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“심판 사건 중 새로운 법률적·기술적 쟁점이 있는 경우, 이를 국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”며, “특허심판원은 심판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와 함께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심판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.”고 밝혔다.

※ 붙임 1: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주요/언론보도 심결문 화면
 2: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이메일링 서비스 신청 화면

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유철중 사무관(☎ 042-481-591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

붙임 1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주요/언론보도 심결문 화면

HOME | SITEMAP

특허심판 안내
사이버민원 안내
심판조치/검색
자료실
특허심판원 소개
특허로
특허청

HOME > 자료실 > 주요/언론보도 심결문 < 자료실 | 특허심판원

주요/언론보도 심결문

자료를 검색하실때, 키워드를 입력하신 후 검색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.

기간으로 조회할 경우 2011년 1월 1일은 20110101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
총 : 115건, 1/12(Page) 년월일 : ~ 선택 검색 취소

번호	제목	첨부	담당부서	작성일	조회
115	(2019-07-10) 주요/언론보도 심결문 NEW		특허심판원	2019-07-10	2
114	(2019-07-10) 주요/언론보도 심결문 NEW		특허심판원	2019-07-10	4
113	(2019-07-10) 주요/언론보도 심결문 NEW		특허심판원	2019-07-10	3
112	(2019-07-10) 주요/언론보도 심결문 (2/2) NEW		특허심판원	2019-07-10	5
111	(2019-07-10) 주요/언론보도 심결문 (1/2) NEW		특허심판원	2019-07-10	3
110	(2019-07-02) 주요/언론보도 심결문 (2/2)		특허심판원	2019-07-03	100
109	(2019-07-02) 주요/언론보도 심결문 (1/2)		특허심판원	2019-07-03	101
108	(2019-07-02) 주요/언론보도 심결문		특허심판원	2019-07-02	98
107	(2019-07-02) 주요/언론보도 심결문		특허심판원	2019-07-02	80
106	(2019-07-01) 주요/언론보도 심결문		특허심판원	2019-07-01	96

뉴스레터 신청하기

« < 1 2 3 4 5 6 7 8 9 10 > »

자료실

심판통계 >
소송통계 >
심판연구자료 >
법령자료 >
발간자료 >

- 심판관람
- 구술심리 매뉴얼
- 소송수행 업무편람
- 심결취소소송정리집
- 상표디자인판결문요지집
-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공모전
- 기타

교육자료 >

주요/언론보도 심결문 >

뉴스레터 >

구술심리일정 및 방청신청 >

- 구술심리일정안내
- 구술심리방청신청

단체견학 안내 및 신청 >

- 단체견학안내
- 단체견학신청

특허고객 상담센터
1544-8080

붙임2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이메일링서비스 신청화면

메일링 서비스 신청/해지 - Internet Explorer

https://www.kipo.go.kr/ipt/BoardApp?c=9002&boardType=decision

메일링 서비스

수신 메일링 선택 ☐ 주요/언론보도 심결문 ☐ 뉴스레터

소속 선택 ☒ 로스쿨 ☐ 특허법인 ☐ 특허법률사무소 ☐ 기타(직접입력)

자격증 소유여부 ☒ 변리사 ☐ 변호사 ☐ 기타(직접입력)

직업 ☒ 대학생 ☐ 대학원생 ☐ 로스쿨 교수, 법과대학 교수 ☐ 변리사 ☐ 기타(직접입력)

이메일 @ 선택하세요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

특허심판원은 메일링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관/관리하고 있습니다.

1. 정보 수집 목적
 - 특허심판원의 소식을 이메일 발송
2. 수집 정보
 - 이메일
3. 수집 방법
 - 홈페이지의 각 게시판 별 '메일링서비스 신청'을 통한 직접 입력방식
4. 보유기간
 - 메일링서비스 수신을 거부하거나 또는 철회 의사를 밝힌 경우, 해당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됩니다.
 - 수신거부 또는 철회의사의 근거자료는 2년간 보유하게 됩니다.

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.

신청하기 해지하기

붙임3 특허심판원 심판속보 예시

<제목> 화장품법의 규제에 의한 불사용은 '정당한 이유'에 해당

<사건개요> 2017당4019, 4020 심결2건(불사용취소심판)

상처치료용 연고제의 제품명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(화장품 등)에 대하여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됨

이 사건 등록상표	지정상품
MADECASSOL 마데카솔	상품류 구분 제3류의 화장품 등

<쟁점요지 >

◇ 심판청구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데 정당한 이유(화장품법에 따른 규제)가 있는지 여부(적극)◇

< 심결요지 >

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화장품법 제13조 등에서 정한 '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'에 해당한다는 '법률에 의한 규제'에 따라 상표권자라 하더라도 화장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, 위 불사용행위는 법 제119조 제3항에 규정된 '정당한 이유'에 해당

가.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등의 규정 ('법률의 규제' 현황)

- ① **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** : 제조업자,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'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' 행위를 금지
- ② **화장품법 시행규칙 [별표 5] '화장품의 표시·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' 제2호 가목** : '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, 제품의 명칭 및 효능·효과 등에 대한 표시·광고를 하지 말 것' 규정
- ③ **화장품법 시행규칙 [별표 7] '행정처분의 기준'** : 위 별표5 위반시 해당품목의 판매업무 또는 광고업무를 3개월 내지 9개월 간 정지토록 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을 규정
- ④ **대법원 2003. 2. 28. 선고 2002두6180 판결** : 화장품법에 따른 과대광고 등 해당여부는 '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·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' 함

나.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의약품의 명칭으로 알려져 있는지 여부

이 사건 등록상표 “**마데카솔**”은 상처치료용 연고제 시장에서 ‘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’(특허법원 2008. 10. 30. 선고 2008허11002 판결 참조).

다. 의약품으로 유명해진 상표라는 ‘짐작’만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불사용의 **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**는 주장에 대한 피청구인 반박

- ① 화장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제품출시를 준비하는 것은 ‘불가능한 일’
- ② 등록상표를 화장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‘그에 대한 공여지책으로 “MADECA CREAM”으로 상표등록을 받아 사용중임



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감안시, 화장품법의 규제에 의한 등록상표의 불사용은 ‘정당한 이유’에 해당

<심결 의의>

화장품법령의 규제에 따른 등록상표의 불사용은 ‘정당한 이유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, 이 사건 등록상표는 화장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, 권리로 존속함에 따라 제3자의 유사표장 사용행위에 대응 등을 통해 상표권이 희석화되는 것을 방지 가능